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775 발의연월일: 2022. 8. 4.

발 의 자:양향자·권성동·김경만

김기현 • 김미애 • 김석기

김영식 · 김예지 · 김주영

박 정・박정하・박형수

서병수・서정숙・성일종

송석준 · 안철수 · 양금희

윤주경 • 이병훈 • 이인선

이종배 · 이태규 · 임병헌

전주혜 • 정성호 • 정우택

정운천 · 조명희 · 조오석

조은희 · 주호영 · 최승재

최연숙 · 최형두 의원

(3591)

제안이유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 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

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 트와 석·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 나.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 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제2호 신설).
- 라.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 마.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 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사.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 아.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

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자.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지정·해제"를 "조성·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를 "전략기술보유자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지정하는 경우 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을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단지 조성절차가 조속히 처리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 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제19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처리"를 "지체 없이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15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운영"을 "조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조성·운영"으로, "대하여"를 "대한"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수 있다"를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 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재정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를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전단에도"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쟁력"을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운영 지원, 세제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승인·인가·허가
 -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계약학과 등"을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를 통한 인력양성사업

제37조의 제목 중 "특성화대학"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을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한다.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 ① 특성화대학등의 장은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 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 는 임직원을 겪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 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 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7조의3(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특례)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생 정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 중 "절차와"를 "기준·절차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와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	①
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u>지정·</u>	4 <u>조성·지</u>
<u>해제</u> 및 지원에 관한 사항	<u>정·해제</u>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
	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
	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
	<u>항</u>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	등) ① <u>전략기술보유자가</u>
(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	
<u>다)가</u>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	
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 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 저 정)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 지정하는 경우 특화단지를 조 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단지 조성절차가 조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② ~ ⑥ (현행과 같음)
∥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
<u> 우에는</u>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
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지
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 는 경우 <u>국가균형발전을 위하</u> 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 저 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 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 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

③
<u>다음 각 호의 지역</u>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
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
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u>지역</u>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
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현
행과 같음)
2

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 허가권자는 <u>특별한 사유</u>가 없 으면 인·허가등을 <u>처리</u>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있다.

⑤ (생략)

제20조(특화단지 <u>운영</u> 지원) ① 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u>운영</u>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u>대하여</u>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u>우선적으로 지원한다</u>.

1. • 2.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 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특별한 사유</u>
지체 없이 처리
③ (현행과 같음)
4
<u>15일</u>
i
<u>15일</u>
⑤ (현행과 같음)
∥20조(특화단지 <u>조성·운영</u> 지원)
①
<u>조성·운영</u>
<u>대한</u>
<u>지원하여야 한다</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다음 각 호의 지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 외의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 단지에 대하여 <u>제1항에 따른</u>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 (생략)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지원할 수 있다</u>.

- 1. 2. (생략)
- ② ~ ⑧ (생 략)
-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 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u>한다</u>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u>지역</u>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
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
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u>지역</u>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지원하여야
<u>한다</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u>「국가재정법」</u>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저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
1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0조제3항 전단에
<u> </u>
<u></u>
세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 -----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 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 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 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 <u>운영 지원,</u> 세제지원, 인재양성 지원 등 경쟁력-----

- 1. ~ 3. (현행과 같음)
-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 원 신청 등) ① 전략기술보유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 다.
 -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승인·인가·허가
 -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 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 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 력양성사업
- 2. 3. (생략) <신 설>

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 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 보 및 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 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 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u>계약</u> | 1. -----<u>계약</u> 학과 및 이공계학과 등-----
 - 2. 3. (현행과 같음)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 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

<u>4.</u> (생 략)

② (생략)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u>특성화</u> 저 <u>대학</u>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 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u>특성화대학</u> 또는 <u>특성화대학원을</u> 지정할수있다.

- 1. ~ 5. (생 략) <신 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u> <u>학원</u>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특성</u> <u>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u>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라 한다)를 통한 인
<u>력양성사업</u>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ll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u>특성화</u>
<u>대학등</u> 의 지정 등) ①
<u>특성화대학, 특성화</u>
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 이라 한다)를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 이라 한다)를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②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 이라 한다)를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 이라 한다)를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②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 이라 한다)를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u> 설>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 ① 특성화대학등의 장은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 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 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 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 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 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 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 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

<신 설>

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고등교육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 교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 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 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특례)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생 정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수 있다.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 저 및 특례) ① ~ ③ (생 략)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있다.

<신 설>

<신 설>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
치 및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기준·절차와</u>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
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력의 발굴·유치와 제5항에 따
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